

# 불기2562년 포교사단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단별 토론회 O O 지 역 단

2018.00.00. 00:00 OO지역단 사무실

## 1. 토론회 입재

- 1 토론회 개회 ——— 지역단장
- 2 삼귀의
- 3 반야심경
- 4 인사말(토론회 취지 설명) ——— 포교원 포교국장 보연스님
- 5 지역단장 인사말 및 현황소개(토론방법 설명) ——— 지역단장
- 6 발제자 발표 = 토론
- 7 마무리      1) 지역단장  
                  2) 포교원 포교국장 보연스님
- 8 사홍서원

## 2. 발전방안 집중토론

**전쟁터에 군사를 보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자고 싸워서 이기되 내야 될 세금은 까먹지 말고 잘 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포교활동의 진정한 한 주체인 포교사들을 하나의 심부름꾼 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1 포교원에서는 포교사단을 조직으로 인정하는가?

[배경] 가. 2015년 경남지역단 진주불교대학 포교사회의 포교원 집단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포교원은 포교사단 본단과 소통 없이 직접 진주지역으로 와서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으며, (포교사단 본단 무시)

나. 2017년 11월 서울지역단 단장선거에 포교사단의 상별요청이 없었음에도 포교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함 (포교사단 본단 무시, 지역단과 포교원의 중간 역할을 하는 포교사단 본단을 무시함)

다. 최근 서울지역단 단장 선거에 있어 포교원과 포교사단 본단은 포교사단 관리령과 포교사단 정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포교사단 전체 무시)

라. 서울지역단 선거무산 이후 지금까지 서울지역단을 맡아온 법천 장봉수 서울지역단장 직무권한대행에게 포교원은 "종무행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해임통보를 함으로서 포교사단 내에서의 절차를 무시하였음

마. 상기 외에도 포교원이 포교사단 조직을 무시하는 예는 수없이 많음.

바. 포교원과 지역단의 가교 역할도 못합니다.

바. 글 인용 : 아직도 포교사들을 포교원이나 사찰의 심부름이나 하는 불자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승가의 구태의연함이 변해야 한다. 포교사는 승가를 대리하는 관리자로서, 불교의 수요자인 불자들에게 불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포교사로서의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향은 대체로 포교사들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포교사단이라는 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안] 가. 포교원이 포교사단을 조직으로 인정한다면 최근의 조직을 무시한 조치사항들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조직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포교사단 본단을 무시하고 포교원 주관 지역단 토론회도 중지하고 본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지역단의 문제에 본단이 해결하도록 하고 본단의 법령적 공식 요청이 없는 한 포교원이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의 배경과 같이 포교원이 포교사단을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포교사단 본단은 존재의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포교사단 본단은 포교사단 조직에서 삭제하고,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따른 업무는 현재와 같이 포교원이 직접 수행하고, 포교사단 관리 령에 따른 업무는 지역 포교사단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토론]

## 2 포교원과 포교사단(본단)은 왜 종법 령을 준수하지 않는가?

[배경] 가. 지금까지 서울지역단을 맡아온 법천 장봉수 서울지역단장 직무권한대행의 해임통보 과정에서 포교원은 포교사단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으며,(참고: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6조(단장 등 임원) ⑥ 임원의 선임 및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교사단 정관으로 정한다.)

나. 특히 포교원에서 포교사단 본단으로 보낸 해임문건의 처리 절차에 [담당:전법팀 주임 최현호, 팀장:심원섭, (포교국장스님 미결), (포교부장스님 미결), (포교원장스님 미결) 그리고 포교원장스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징계에 해당함으로 포교원회의로 결정되어야 하며, 포교원에서 포교사단에 공문을 보낼 때는 포교사단의 상임지도위원의 전결은 있어야 한다.

다. 포교사단 정관의 전문위원과 포교사단 관리령의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는가?

라. 포교법 제33조 (사찰의 포교 의무) ① 교구본사 및 사찰, 포교당은 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사찰 및 포교당은 포교사 및 포교사단의 활동을 지원, 지도하여야 한다.

마. 제34조 (포교사의 지위보장) ① 포교사의 종단적 지위는 우선적으로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각 사찰은 유급 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적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제35조 (포교사 자격직) 다음 직에 취임할 자는 포교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각 본사, 말사, 포교당의 재가 사무국장 및 사무장
2. 종단 등록 실행단체의 주요 간부
3. 기타 종법 종령에 의하여 지정된 직

사. 포교사단의 정관이 포교사단 관리령을 위배하고 있는 부분은 왜 관리하지 않는가?

아. 포교법,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포교사단 정관 등, 지켜지지 않는 법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방안] 가. 포교사단 정관을 포함하여 종법 및 종령에 포교사와 포교사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에 당사자인 포교사와 포교사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징계의 경우, 포교사단의 요청에 의한 포교원의 결정도 있지만 포교원의 일방적인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군림하는 갑질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고 종교적 차원에서 미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적 방지장치가 필요하다.

[토론]

### 3 포교원 재가종무원이 포교사단을 지도, 관리 및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배경] 가. 포교법 제12조 (포교단체 설치) 특수분야의 포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교원 산하에 경승단, 교법사단,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각 단체는 **포교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포교법 제33조, 35조에 종단의 재가종무원은 포함되지 않는가?

다. 포교법 제18조 (포교원 회의) ① 포교원장은 포교원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포교원회의는 포교원장, 포교원 각 부·실장, 포교원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라. 포교법 제17조 (권한) “포교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8. 포교원 산하 교육기관, 포교단체, 신도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 9. 경승, 군승, 교법사, 포교사, 국제포교사, 전교사 등의 포교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

마.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 5 조 (총재 등)에 “① 포교사단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한다. ② 포교사단은 포교사단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둔다. ③ 포교사단은 포교사단의 운영 및 활동을 지도 권고하는 약간명의 지도위원을 두며, 포교원 포교부장을 당연직 상임 지도위원으로 하며, 포교원 포교국장을 당연직 부상임지도위원으로 한다. ④ 총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권, 2. 단장·부단장·감사·지역단장·해외단장 임명권)”으로 되어 있으므로 포교원장스님, 포교부장스님, 포교국장스님에 한정되어 포교사단을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바. 포교사단 정관 제13조 (총재) ① 본단의 총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4조 (지도법사·자문위원) ① 본단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지도하는 약간 명의 지도법사를 둘 수 있으며, 포교원 포교부장과 포교국장을 당연직 지도법사로 한다.

[방안] 가. 재가종무원이 포교사단을 지도 감독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

나. 재가종무원은 포교사 및 포교사단 관련 법령 및 포교사단 정관 및 규정 등을 개정하는데 참여해서도 안 된다.

[토론]

### 3. 포교사관련 포교사단 정관 및 종법(령) 개정 요청(안)

1.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및 포교사단 운영지침(관례)는 폐지하고 그 내용을 정관으로 이관한다.

- 변칙운영, 예외적용 방지

[토론]

2. 포교사단 명칭의 사회화

- 강제성을 동반한 집단 또는 단체의 표현을 종교적 차원에서 같은 뜻을 가진 모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포교사회, OO지역단 => OO지역회

[토론]

3. 포교사단 조직명칭 정리, (지역)지역단=>(지역)포교사단=>(지역)포교사회

-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 7 조 (대의원총회) ②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임원 2. 각 지역 및 해외 포교사단 임원 14인 이내 3. 각 지역 및 해외 포교사단 팀장

- "(지역)포교사단=>(지역)포교사회"로 표현함이 령에 합당하고, 표현의 모순도 해결할 수 있음. (지역)지역단=>(지역)포교사단

[토론]

#### 4. 사업범위의 실질화

- 포교사단 정관 제3조(사업) 본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추진하는 포교사업 수행
  2. 포교사의 수행 및 전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교육사업
  3.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포교자료 발간과 세미나 개최
  4. 불교문화의 보존과 증진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불교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
  6. 본단 설립법인과의 연계사업
  7. 기타 본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현 제 3조의 사업범위는 포교원이 해야 할 일을 포교사단이 모두 하도록 되어 있어 지시 감독의 범위를 무한대로 늘려 놓은 상태임. 모두 포교원이 해야 할 일들이며 포교사단의 사업범위는 직접포교에 한정해야 함
- 제12조 (위원회) ① 본단은 효율적인 포교활동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포교사단 본연의 직접포교가 혼탁해지고,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영을 위한 위원회(상벌, 선거관리)만 존재하도록 하여야 함

[토론]

#### 5. 포교사단 정관 및 포교사단 관리에 관항 령에 포교활동의 범위(영역)를 직접포교로 한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본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추진하는 포교사업 수행
  2. 포교사의 수행 및 전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교육사업
  3.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포교자료 발간과 세미나 개최
  4. 불교문화의 보존과 증진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불교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
  6. 본단 설립법인과의 연계사업
  7. 기타 본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포교사와 포교사단과 관련된 현존하는 법령, 포교사단 정관,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및 포교사단 운영지침(관례)에는 포교사의 포교활동 영역을 정의한 곳이 없다. 위 3조가 대변하듯 포교사단은 만능이어야 한다.
- 그나마 포교사와 포교사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 제2조 (전문포교사의 정의) ② 전문포교사의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 실행지도전문포교사 가.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포교분야, 나. 직장·직능 및 군경교도소 포교분야, 다. 교육 및 수행 포교분야,
2. 문화예술전문포교사 가. 불교문화해설 포교분야, 나. 출판, 인터넷 포교분야, 다. 예능, 스포츠 포교 분야
3. 사회·복지전문포교사 가. 환경, 평화, 인권(외국인 근로자 포함) 및 통일 포교 분야, 나. 자원봉사, 복지 및 포교분야, 다. 법률, 의료 및 상담 포교분야

를 명시하고 있음이 유일하게 포교사단 포교사들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 만능이라 해도 다하기 어려운 여러 분야를 다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능력도 안 되는 부분까지 감당하자니 팀활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 포교사의 입장은 그렇다하고, 포교의 모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많은 부분을 포교사단의 포교사가 해야 된다면 포교원이나 스님들은 뭘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따라서, 포교사단의 수준에 맞게 포교활동의 영역도 직접 포교부분으로 축소하고, 이를 정관에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며, 포교사단에서 어느 부분까지 포교활동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

6. 직접포교에 집중하기 위하여 포교사단 내에는 어떠한 산하단체도 두지 않아야 한다.
  - 포교사단 정관 제2장 제11조 (조직) ③ 본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 포교사단 운영 지침 (관례) 1. 포교사단의 산하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교사업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인력지원 : 포교사단 사무국장-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 과장- 사)좋은인연 과장, 포교사업비 : 포교사업비 예산을 산하 단체와 연대하는 사업으로 지출.
  - 포교사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직접포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교영역을 직접포교에 한정하도록 위에서 건의하였던바, 포교사단은 포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도 포교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산하단체(예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사)좋은인연 등)를 두지 않아야 하며,
  - 직접포교와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참여 요구 시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예: 행복바라미 모금행사)
  - 이를 법 령에 확실히 명시하여야 한다.

[토론]

## 7. 임·면의 질서 확립

-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 5 조 (총재 등) 2. 단장·부단장·감사·지역단장·해외단장 임명권
- 포교사단 정관 제13조 (총재) 2. 단장, 수석부단장, 부단장, 지역단장, 감사 임면권. - 령과 일치화를 요함
- 포교사단 정관 제18조 (선임) 및 제19조 (해임 사임) 철차준수

[토론]

## 8. 임원의 범위 정립

- 포교사단 정관 **제15조 (임원)**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단장 1인
  2. 수석 부단장 1인
  3. 부단장 4인 이내와 지역단장
  4. 전문운영위원
  5. 감사 2인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 6 조 (단장 등 임원)
  - ⑤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구성
- 령이 정관의 상위법이므로 정관을 령에 맞게 수정하고
- 정관에 전문운영위원 삭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가, 령에 지역단장 추가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별위원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해야 함
- 전문포교사 자격요건 폐지(14,항에서 정리)

[토론]

## 9. 운영위원의 범위정립

-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제 8 조 (중앙운영위원회)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조제5항 중앙임원(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2. 각 지역 포교사단 대표 3인
- 포교사단 정관 **제26조 (구성)**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제15조의 임원 (단장 1인, 수석 부단장 1인, 부단장 4인 이내와 지역단장, 전

문운영위원, 5. 감사 2인)

2. 각 지역단 대표 2인(지역단 부단장)

3. 본단설립 법인대표

4. 본단 산하단체 대표

- 령이 정관의 상위법이므로 정관을 령에 맞게 수정하고
- 정관에 전문운영위원 삭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가, 령에 지역단장 추가
- 본단 설립 법인대표 및 본단 산하단체 대표 삭제,
- 포교사단 외 별도 법인 및 산하단체를 두는 것은 포교사단 본연의 임무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체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야 한다.
- 전문포교사 자격요건 폐지

[토론]

#### 10. 임원의 선임방법 개선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있는 선임방법관련 내용을 정관으로 이관,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7조 (포교사단 단장) 개선을 요함
  1. 선거제는 선거 전 후에 많은 부작용들을 보이므로 추대제로 변경
  2. 현재 본단이 수행하고 있는 포교사단 관리업무를 지역단으로 이관하여 관장 업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본단 단장은 지역단장의 협의로 대표단장을 추대하거나, 전(앞) 지역단장의 협의로 차기 본단단장 추대
  3. 지역단장의 선출은 수석부단장을 지역단 운영위에서 추대하여 선거의 과열되는 양상을 배제하고 2년간 의무감 책임감으로 업무에 참여하여 준비된 자세로 다음 단장이 될 수 있도록 단장선거에 단독 출마 또는 추대할 수 있도록 한다.
  4. 운영위원 추천제 폐지 또는 복수 추천 허용
  5. 제척사유를 들어 감사와 피선거권자의 투표권 제한은 부당
  6. 전문포교사 자격요건 폐지

[토론]

#### 11. 전문운영위원 폐지

- 포교법,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에는 단어조차 없는 전문위원을 “포교사단 정관 제15조 (임원)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4. 전문운영위원”(딱 한번 나옴)을 넣어두고는,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6조 (전문운영위원의 종류 13명), 제37조 (전문운영위원의 임무)를 규정하여 형식화하고 있으나
- 지금까지 활동내역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어떤 활동이나 정책을 제시할만한 예

시가 없으므로 폐지하여야 하고

-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에 정책제안 한번 없이 편들기에만 치중하는바 실질적 조직운영에 도움이 안 되므로 폐지하여야 하며,
- “포교사단 정관 제 4 절 지역단 운영위원회 제54조 (구성)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49조의 임원과 포교활동 팀장, 지역단소속 본단 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지역단 운영위원회의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단의 운영을 방해하므로 실 포교활동(지역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하여야 함
- 아울러 정관 제 4 절 지역단 운영위원회 제54조 (구성)의 “지역단소속 본단 임원”(본단 임원의 지역단 운영회의 참여)은 삭제되어야 함

[토론]

## 12. 포교사의 징계절차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제 22 조 (징계절차)는 수정되어야 하고, 포교사단 관리령과 포교사단 정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이미 포교사로 선발되어 포교사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이라면 모든 징계절차는 포교사단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포교국, 포교사단에서 징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와 자체적으로 사함을 인지한 경우로 조직의 외부까지 징계요청을 확대한다는 것은 포교원이 포교사단을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 포교사단 정관 제9조 (포상과 징계) - 절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
- 포교사단 자체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1.항 참조
- 지역단에서도 경미한 사함은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징계를 포교원회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 운영의 자결성을 위해하며, 반대로 포교원 맘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므로 단계로 분리하거나 총재(포교원장 아님)의 재가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즉, 징계의 종류로서 “1. 자격박탈 2. 제적 3. 자격정지 4. 경고”가 있으며, 포교사단 조직 내의 사안이므로 징계요건이 발생한 소(하부)조직의 징계요청이 있으면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감사(조사위)에게 조사를 요청하며, 11항에 따른 조사(지역단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단 운영위(상별회의)에서 정관에 따른 징계의 정도를 판단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는 지역단에서 결정하고 지역단장의 재가로 종결하고, 지역단 운영위에서 제적 또는 자격박탈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간의 조사내용 및 운영위(상별회의)의 결과를 첨부하여 포교사단 본단으로 이관한다. 징계를 요청받은 본단은 즉시 11항의 감사위원회(가칭)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단으로 기각할 것인지, 상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상별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여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며, 제적의 경우는 본단 단장의 재가로 종결하고 자격박탈은 총재의 재가로 결정된다. 최종 결재에서 각하된 경우 징계는 그 하위의 징계로 확정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 2. 업무정지 3. 자격정지(3년 이내) 4. 제적 5. 자격 박탈 ② 업무정지는 팀장이나 임원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에서 해임되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단원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다. ③ 단원 제적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는 포교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본 단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한 징계 처분 시에는 그 손실의 회수 및 변상 등이 병행된다.”로 되어있어 일반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과 징계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바 일반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의 내용 중에서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토론]

13. 포교사단 정관에 감사와 조사업무를 위한 감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조사위원회에 감사와 조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포교사단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조직이면서 자치 및 자주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포교사단을 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 현행 포교법부터 포교사단 정관까지 조사위원회는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제 22 조 (징계절차) ② 포교원장은 제1항에 의해 징계요청이 접수되면 조사반을 구성한다. ③ 조사반은 포교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약간명의 포교원 종무원으로 구성한다.”만 있으므로 포교사단은 자치 자주권이 없는 조직이 된다.
- 현행 법령대로라면 조선총독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던 일제 식민지의 형식이나 다름없다.
- 어떤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위 자치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토론]

14.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개정 요청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있어서, 이미 포교사로 선발되어 포교사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이라면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및 포교사단 정관에 따라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은 일반포교사 선발에 관한 령으로 수정 및 개정하고,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및 포교사단 정관에 따르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토론]

#### 15. 일반포교사 선발 및 불교대학 관리방법 제안

- 이름만 가지는 불교대학은 정리하여야 함. 최근 2-3년 동안 졸업생이 없거나, 포교사 배출이 없거나(?), 종법 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위배하고 있다면 당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불교대학 졸업시험을 시행하여 일정점수(예:50점)이상 취득자에게 졸업자격을 포교원에서 부여하고, 응시료는 아주 소액만 받거나 받지 않으며, 문제 출제와 채점 및 합격자 발표는 포교원이 시험장 관리는 포교사단이 한다.
- 그 이상의 일정점수(예:70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포교사고시 2차연수 참가 자격을 부여하며, 2차연수를 무사히 마친 자에 한하여 포교원에서 포교사증을 교부한다. 2차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포교사단이 부담한다.
- 입단비 10만원도 받지 않아야 한다. 포교사증 제작비는 포교원이 부담한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댓가여야 한다. 불교대학은 가르침을 주고 그 댓가를 받는다. 졸업시험이나 포교사고시의 응시료는 그간의 수업료나 앞으로의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의 2차 연수비용도 받지 않아야 하며, 입단비도 무상으로 일하겠다고 단체에 들어오는데 돈을 받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도둑질과 다를바 없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포교라는 종교 최대사업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나라가 군대를 양성하듯이,

[토론]

#### 16. 포교사단 및 지역단 임원의 자격에 전문포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함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6조 (임원선임 공통요건) ① 임원자격 1. 전문포교사”로 명시되어 있고,
-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6조 (단장 등 임원) ⑤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구성하되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에 관한령이 정한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불기2558(2014)년 3월 5일 개정)
- 위 두 조항에서 포교사단 및 지역단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전문포교사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전문포교사는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으로 일반포교사와 별도로 관

리하고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일반포교사가 활동하는 포교사단으로 들어와 정해진 역할이나 활동도 없이 포교사 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게 되고,

- 디지털대학의 전문포교사 과정이 포교사단의 임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포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오랜 시간을 포교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모범이 되고 포교사단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탁월함에도 포교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15항 참조) 전문포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대학원 나와야 정부나 기업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억지임.
- 따라서 포교사단 및 지역단 임원의 자격에 전문포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토론]

#### 17. 전문포교사단(가칭) 창단 및 포교사단에서 삭제

- 포교사단 정관 제6조 (단원의 자격) ① 본단의 단원자격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법, 일반포교사선발및자격관리에관한령,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에관한령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나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은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 관련성이 없다는 근거로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에관한령 “제3조 (사정위원회) ① 포교원장은 포교사단 추천위원 4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포교사 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와 “제7조 (제출서류) 4. 포교사단 지역단장 추천서”로 2회의 포교사단 명칭이 거론되나 전문포교사와 포교사단은 관련성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 근거라고 한다면, 포교법도 아니며, 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도 아니며,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도 아니며 포교사단 정관도 아니다, 근거라면 오직 한 줄, “포교사단 운영 지침 (관례) 4. 전문포교사 관리 령의 세부안이 예고될 때까지 전문포교사를 포교사단이 관리한다.”를 빌미로 포교사단에 전문포교사가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는 독소 조항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전문포교사와 포교사단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일반 포교사의 집단인 포교사단에서 전문포교사는 모두 삭제하여야 함.

[토론]

#### 18. 전문포교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 포교원은 포교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려해서는 안 된다. 전문포교사 제도와 직접 연관이 있는 디지털대학의 교육포교사업이 영리사업으로 전락하는 순간 포교의 의미는 없어지고 만다.
- 디지털대학의 전문포교사과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은 무상이어야 하며, 모든 운영비용은 포교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일반포교사 재교육과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포교사 경력 5년에서 7년 사이에 과정을 수료하도록 의무교육으로 한다.
- 7년차 이내에 재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차기 갱신에서 자동 탈락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라도 수료하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완벽하게 포교사의 재교육으로 전문포교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포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포교사단 임원 선임의 기준에 "포교사 재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명시해도 위화감을 나타내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

[토론]

#### 19. 갱신기간의 개선을 위한 제안

- 포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포교사들의 경우, 갱신이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 갱신을 하는 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갱신 포기자의 절반(50%)이 최초 갱신자이며 그 중의 절반은 일 년도 되지 않아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중요한 것은 포교활동에 대한 불만토로나,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최초 갱신 이전의 1-2년차에서 발생한다.
- 따라서, 최초갱신은 2년으로 줄이고 그 이후는 5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

#### 20. 단원의 활동을 주소지로 제한지 않아야 한다.

- 서울의 포교사가 제주의 활동팀과 같이 활동한다고, 서울의 포교사가 경제사정상 집값이 싼 충청지역으로 이사를 와서는 전에 하던 그대로 서울 가서 활동을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인가?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장 단원 관리]에는 제4조 (단원의 자격), 제5조 (단원의 의무) 및 제6조 (단원의 전적)있으며 활동지역의 선택은 어디에도 언급된바 없으며, 활동지역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현재 많은 포교사들이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 서울지역단 이주영 단장의 경우 작년 서울지역단 단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는 상대후보의 문제제기로 급하게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더니 그 것도 전적을 위반했다고 해서 결국 무슨 근거인지 누가 승인했는지 자격박탈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당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2년 전 9대 단장선거에는 경기도 주소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
- 그것을 법이라고 적용하려면 시작(품수)부터 포교사 그만 둘 때까지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명시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 포교사가 포교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야 한다.
- 현재도, 품수 시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 따라 적절한 근거만 제시하면 원하는 곳으로 활동지역을 지정해주고 있으니, 품수 후 활동 중에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단을 옮겨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상기 "제6조 (단원의 전적)"에 따라 옮기도록 하며,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 단, 분단의 경우는 분단 자체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단 주소지를 기준하여 활동지역단이 강제로 결정되고, 분단에 따르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주소지, 근무지, 재적사찰 등 활동하기 편리하고 잘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전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6조도 수정되어야 한다.

[토론]

## 21.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15조 (해산절차 및 잔여재산 귀속) 삭제 요청

-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15조 (해산절차 및 잔여재산 귀속)
  - ① 포교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교원회의를 거쳐 종무회의의 의결로 해산한다. 1.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2. 종법 또는 종령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본종의 종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② 포교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포교원에 귀속한다.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함은 목표설성이 잘못 되었거나 목적을 수정해야할 사항이고, 혹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포교를 근본으로 하는 포교원이 앞장서서 지도와 지원으로 포교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종법 또는 종령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본종의 종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등은 조직(포교사단)의 내부 즉 포교사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해당이 없으며, 종법 또는 종령에 의한 명령을 운운함은 종교적으로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며,
- "잔여재산은 포교원에 귀속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악용할 소지가 충분이 있으므로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15조 (해산절차 및 잔여재산 귀속)은 삭제되어야 한다.

- 혹, 천재지변 등으로 포교사단을 해산해야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잔여재산은 당연히 재산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포교사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 22. 국제포교사의 영역침범으로 일반포교사 활동팀의 해체는 포교원이 중재해야 한다.

- OO지역단 OO총괄팀에 어린이청소년포교 OO팀이 오래 전(200?)부터 OO지역 OO사에서 활동하고 있었음.
- 언제부터 영어로 무장한 국제포교사회 포교사들이 영어를 이용하여 OO팀에 앞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OO팀은 활동 근거지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
- 당시 3-4명의 국제포교사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웠는지 활동은 허지부지 되었고, OO팀에서 다시 어린이 청소년을 모아보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OO팀 마저 해체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 이러한 문제는 포교원만이 중재가 가능한 것이므로 포교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23. 포교회관 건립추진 즉각 중지 및 포교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해산

- 포교사단 정관 및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포교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명시한 곳은 없다. 정상적인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 포교사단 사무실은 현재 정도로도 충분하다.
- 현재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추고 지역단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불교대학이나 사암연합회 또는 사찰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회의라도 하려면 다른 장소를 빌려야 한다.
- 시급하고 우선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 단연 지역단 사무실이 우선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포교 일선이 우선되지 않는 포교사단이라면 있어서는 안되는 방해 조직에 불과할 것이므로 포교사단은 지역단 사무실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포교회관 건립추진을 중지하고 포교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토론]

24. 포교사 활동을 자의로 일시정지를 가능하도록 하자.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제8조 (자격관리) ① 포교사 자격은 3년 주기로 갱신한다. ② 포교사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포교사 자격을 갱신받아야 한다. ③ 본인이 자의적으로 포교사 자격을 반납하는 경우 포교원장은 포교사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다만 본인이 다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포교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회복하여 줄 수 있다.
- 위 ③과 같이 자격의 일시정지가 가능하지만 제도적으로 복잡하고 단비 등의 기준이 모호하여 포교원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단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자격 일시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론]

25. 포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포교사의 연수(교육)를 정리해보고자 포교사관련 법령부터 포교사단 정관 및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까지, 그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리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 포교법 제3장 포교사 제32조 (포교사의 의무) ③ 포교사는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9조 (포교사의 연수교육) 삭제 :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고는 39조의 연수교육은 삭제하였음. 무슨 연수를?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제2조 (포교사의 활동) 3. 포교사는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소양교육, 포교분야별 전문교육, 수행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포교원에서 확실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단원의 의무)** ④ 교육 및 연수 이수  
1. 단원은 포교원 및 본 단이 정한 소정의 정기연수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지역단에서는 지역연수, 분야별연수, 봉축행사 등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연수 결과를 포교사단에 보고한다.
-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조항을 인용하여 보았다. 모든 법령에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정리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 예를 들어,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는 팔재계수계법회를 포교원 정기연수라고 알고 있지만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정의한 곳은 없다.
- 간단히 제안컨대 팔재계는 현 상태로 교육효과가 없으므로 지역단별로 분리하고 해당 교구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 분야별연수는 사람들 모아놓고 시간 때우기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보교환이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수(교육)체계를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포교원, 포교사단 및 지역단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은 미루지 말고 본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주체에게 넘겨서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론]

## 26. 포교사단 정관개정 조속추진

- 포교사단 정관 및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 지난 7월00일 포교사단 지역단장 긴급소집에서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스님께서 “개정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강조하여 또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TFT를 구성하고 최소 3개월은 검토 편집 수정을 거치고 총재의 긍정적 인정이 있어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개정안의 승인을 받고, 또 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에 들어가려면 남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 우선 TFT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일선 포교의 선봉장을 맡고 있으면서 포교원, 포교사단 및 지역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지역단장으로 TFT를 구성해야 하고, 이 TFT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
- 포교법에서 포교사단 지침까지 포교사와 관련이 있는 법령도 검토 및 수정 사항이 있으면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